

# 국 민 안 전 처

## 훈계 · 주의 요구

제 목 도심○○○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영월군

관 련 자 영월군 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1. 5. 20.부터 2015. 4. 14.까지 영월군 ○○○ ○○○과에서 근무하면서 도심○○○ 조성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.

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르면 특별시장 등은 같은 법 제9조제1항107)에 따라 지정된 “보행환경개선지구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108)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,

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이에 근거하여 영월군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[표 1]과 같이 시행 한바 있다.

[표 1] 도심○○○ 조성사업 현황(당초 공사)

공사 구분	사업량	사업비(백만원)			사업기간	도급업자	비고
		계	국비	지방비			
	1,057	1,057	528.5	528.5			
일반	○○○○○~○○○○ 정문 보행환경정비사업 외 3건	878	439	439	2015.7.1~2016.5.25.	(주)○○○○ 등	
전시	○○○○ 후문 지하도 ○○○○ 전시공사	179	89.5	89.5	2015.7.1.~2015.12.3.	(주)○○	

\* 자료 :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

107) 특별시장등은 ①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, ② 노인·임산부·어린이·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, ③ 역사적 의의를 갖는 문화가 형성되어있는 구역,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하여 보행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
108) 특별시장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

## 1. 경쟁입찰 대상이나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,

또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5장 “수의계약 운영요령”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의 공사 또는 용역의 경우 1인 견적제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한 반면, 2천만원을 초과 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런데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 도심○○○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은 시기에 동일한 사업을 [표2]와 같이 2~6개 사업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다.

[표 2] 도심○○○ 조성사업 현황(당초 공사)

구분	사업명	계약방법	계약일자	사업비	공사기간	비고
일반 공사	도심○○○ 조성사업 철거공사	수의	2015. 00.00	17,780	'15.00.00.~'15.00.00.	
	○○ 주정차 ○○ 화분설치	수의	2015. 00.00	4,983	'15.00.00.~'15.00.00.	
	○○주차장내 ○○○ 설치	수의	2015. 00.00	4,950	'15.00.00.~'15.00.00.	
	○○ 보수공사	수의	2015. 00.00	3,200	'15.00.00.~'15.00.00.	
	○○공사	수의	2015. 00.00	11,869	'15.00.00.~'15.00.00.	
	○○이식	수의	2015. 00.00	3,800	'15.00.00.~'15.00.00.	
설계 용역	○○○○~○○○○ ○○정비 사업 실시설계	수의	2015. 00.00	21,938	'15.00.00.~'15.00.00.	
	○○표시 개선공사 실시설계	수의	2015. 00.00	10,300	'15.00.00.~'15.00.00.	
	○○○ 앞 교차로 실시설계	수의	2015. 00.00	7,600	'15.00.00.~'15.00.00.	
폐기물 용역	○○철거 폐기물 용역	수의	2015. 00.00	10,373	'15.00.00.~'15.00.00.	
	○○○○○~○○○○○ 정문 폐기물 용역	수의	2015. 8.20.	29,040	'15.00.00.~'15.00.00.	

## 2. 유사한 사업을 분할 계약하여 예산 낭비 등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러나,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“도심○○○ 조성사업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다르게 [표 3]와 같이 분할 계약함으로써 경쟁입찰 평균낙찰률 대비 총 8,234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.

[표 3] 도심○○○ 조성사업 분할에 따른 예산 낭비 현황

구분	사업	사업비	평균 낙찰률(%)	계약금액	비고	
일반 공사	경쟁	○○○○로~○○○○ 정문 보행환경정비사업 외 3건(유사 사업)	993,534	87.901	831,709	
	수의	도심○○○ 조성사업 철거공사 외 5건	46,582	95.350	44,100	
		유사 사업 평균낙찰률 적용시	46,582	87.901	40,946	
		차액			3,154	
용역	경쟁	○○○○로~○○○○ 정문 보행환경정비사업(유사 사업)	29,932	87.776	26,290	
	수의 차액	○○○○~○○○○ 후문 보행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	39,838	93.567	37,000	
		유사 사업 평균낙찰률 적용시	39,838	87.776	34,968	
		차액			2,032	
전시	경쟁	○○○○ ○○ 지하보도 ○○○ 전시공사(유사 사업)	190,751	87.969	172,574	
	수의	○○○○ ○○ 지하보도 ○○○ 조명공사 등 2건	25,476	93.400	23,700	
		유사 사업 평균낙찰률 적용시	25,476	87.969	22,410	
		차액			1,290	
폐기물 처리	경쟁	○○○○~○○○○ 후문 보행환경정비사업 폐기물 처리(유사 사업)	40,700	89.905	36,295	
	수의	공가철거 폐기물 용역 등	39,413	94.365	37,192	
		유사 사업 평균낙찰률 적용시	39,413	89.905	35,434	
		차액			1,758	

조치할 사항          영월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향후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,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